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지급 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3조 ~ 제4조)
-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제7조)
- 장학금액 및 지급정지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현행 조례의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1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입법체계상 정의규정과 함께 기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3조(장학금의 종류)에서 유공자자녀 장학금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모범생 장학금으로 개정하였음. 우등생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모범생은 '학업이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인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지급대상) 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단서규정으로 본 장학금 액수보다 다른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선정)에서 현행 조례상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구청장이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8조(장학금액)는 매 학기별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려는 것은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액 지급 가능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2021.5.13.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지급시기)에서 현행 조례상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10조(지급정지 등)에서 기존에 장학생 선발 후 학년을 마칠 때까지 1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개정된 통장자녀 장학금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 전에 고등학생 통장자녀는 학기별 지급으로 공납금 2회분의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새마을자녀는 1년간 지급으로 4회분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1인당 2배의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통장자녀와 새마을자녀는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었음.

####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새마을 장학금 지급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와 문장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66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8명

### 1.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지급 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안 제3조 ~ 제4조)
- 다.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제7조)
- 라. 장학금액 및 지급정지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수정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기준」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2. 모범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②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8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과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영등포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7조(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제9조(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